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

제 목 계약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총 220건의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계약 체결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공사	용역	물품
	220	19	61	140
2021.7.~12.	35	5	9	21
2022	43	3	9	31
2023	87	9	25	53
2024.1.~현재	55	2	18	35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미등록자와 계약체결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¹⁾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²⁾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준공 정산 시 갖추어야 할 서류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과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등에 따라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하고,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석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1. 꽃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꽃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부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훈령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18조·제20조·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³⁾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청사 신·증축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미한 공사의 범위(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전기공사업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어야 했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 또는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준공 요청을 받았을 때 제출받은 준공서류(준공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계, 준공검사원, 최종정산내역서, 보험료 납부증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사진대장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 증빙이 되지 않은 금액은 감액조치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했고, 계약·지출증빙서류 등을 규정에 맞게 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공사의 도급계약 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계약 체결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청사 신·증축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 총 19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 10. 22. ○○ ○○ ○○ ○○○○ 계약 체결 시 ○○○○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11. 8. ○○ ○○ ○○○○ ○○ ○○ 시에는 ○○○○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준공 시 정산처리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총 19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준공서류(준공계, 준공검사원, 정산내역서, 사진대장 등)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했으나 총 19건 중 14건은 계약상대자에게 준공정산내역을 요청하지 않고 정산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 정산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1. 11. 7. ○○ ○○ ○○○○○○ 시 ○○○○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인 3년으로 설정하여 하자보

수에 대한 확약 및 각서를 제출받았어야 했으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유지 관리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3.까지, 소방♡ ♡♡♡은 2022. 7. 4.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4. 6. 30.까지 ○○○ ○○○장으로,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4. 7. 3.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17. 7. 10.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2. 8. 1.까지, 소방☆ ☆☆☆은 2022. 8. 2.부터 2023. 7. 9.까지, 소방♡ ♡♡♡은 2023. 7. 10.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현재까지 계약업무담당자로 공사계약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2021. 10. 22. ○○ ○○ ○○ ○○○○ 계약 체결 시 ○○○○ ○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과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설정하는 등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설정을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간 중 총 19건의 공사계약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중 14건은 계약상대자에게 준공시 검토하여야 할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준공정산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정산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계약법」, 「전기공사업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

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사계약 19건 중 14건이 천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의 공사였다는 점, 단시간에 공사계약 관련 법령을 모두 숙지하기는 힘든 점, 관서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청사관리와 물품·용역계약, 물품관리 등 과중한 업무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가. [부서경고] 건설업 등 미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소홀 및 공사계약 준공정산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를 「부서경고」 처분하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주의·통보

제 목 선박주유취급소 허가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前 ○○○○○) 소방○(前 소방○) ○○○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소방서 ○○○○○ 소방○ ○○○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자동차 등의 연료용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위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유취급소에 대한 설치허가를 하였다.

[표 1]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현황

계	주유취급소	셀프주유취급소	자기주유취급소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53	13	9	27	-	-	4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고,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라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⁴⁾·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라 주유취급소⁵⁾·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에 따라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

4)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5)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에 주유하는 선박주유취급소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제조소등의 수·특성 및 위법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소등 및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현황 및 위험물사고 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되 제조소등의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 관계된 변경공사 상황과 특례적용 여부 및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선박주유취급소가 설치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급소 및 저장소 허가를 통하여 설치되도록 하였어야 했고, 관내 운영 중인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소방검사 시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소 및 저장소 허가를 받았는지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였어야 했으며, 통계조사 시에는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였어야 했다.

한편 ○○군에는 ○○○ ○○○ ○○ 등을 목적으로 ○○○○○ 등 5개소 총 6기의 선박 연료용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군(○○○○) 및 ○○소방서와 ○○소방서(○○○○○)는 관내 선박유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설치(변경)허가를 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선박주유취급소 허가 누락

감사기간 중 ○○군 ○○면 소재 ○○○급유소에 대한 설치허가를 확인한 바, ○○○급유소는 1992. 1. 28. 선박유류 저장용 옥외탱크(6만리터)와 선박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한 일반취급소⁶⁾로 최초 설치허가 받은 후 1998. 4. 27. 취급소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동일용도의 저장취급소⁷⁾로 허가사항을 정정 받았으며, 2015. 1. 30. 옥외탱크저장소 교체로 인한 변경허가⁸⁾를 받아 감사일 현재까지 선박에 연료를 주유하는 취급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선박주유취급소 허가를 받거나 이전 저장취급소 허가를 선박주유취급소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소방법 시행령(1991.01.08. 기준) 제34조에 따라 당시 주유취급소의 구분(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부터 제246조까지)에 선박주유취급소가 포함되기 이전으로 일반취급소로 허가됨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거나, 또는 옥외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을 한 취급소

7) 소방법 시행령(1992.07.28. 개정) 제15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종류에 저장취급소가 신설됨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
(소방기술기준 제258조의11에 따라 저장취급소에는 옥외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또는 이동탱크 설치)

*선박주유취급소: 1994. 7. 20.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취급소에 포함됨

↳ 선박주유취급소에 대한 기술기준은 1995. 5. 27. 신설되었으나 지하탱크 설치시 허가가 가능하였고, 1996.

11. 2. 수협이 면세유류 공급사업을 위한 선박주유취급소는 옥외탱크 설치시 허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8) 2015. 1. 30. 변경허가시 옥외탱크에 고정주유설비 2기가 연결되어 설치됨

한편 2004. 5. 30. 소방법이 4개의 법률로 분법·시행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기 허가된 저장취급소 중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은 “저장소”로,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은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옥외탱크저장시설은 “옥외탱크저장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데, 감사일 현재 ○○○ 급유소에 대한 취급소 허가내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04년경 저장취급소에서 옥외탱크저장소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취급소 소방검사 및 통계조사 소홀

○○소방서(○○○○○)에서는 2023. 3. 17.부터 3. 31.까지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11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급유소에 대한 조치명령을 발부하였는데, 위험물 담당자 소방☆ ☆☆☆ 포함 3명은 소방검사시 선박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취급소에 대한 허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급유소에 대한 취급소 허가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급유소에 대한 선박주유취급소 허가를 받게 하거나 허가사항을 정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7. 9.까지 ○○소방서 ○○○○○ 위험물 설치허가 및 소방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유소가 선박주유

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급소로 운영됨에도 2023. 3. 21. 소방검사 및 2023년 통계조사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3. 7. 9.까지 ○○소방서 ○○○○○ 화재 안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유소가 선박주유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급소로 운영됨에도 2023. 3. 21. 위험물 담당자 소방● ●●●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1. 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화재 안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유소가 선박주유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급소로 운영됨에도 2023. 3. 21. 위험물 담당자 소방◇ ◇◇◇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1. 7. 1.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 위험물 설치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유소가 선박주유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급소로 운영됨에도 2022년 통계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위험물 설치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유소가 선박주유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급소로 운영됨에도 2024년 통계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 ●●● ·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다만 소방◇ ◇◇◇은 '2. ○○○○ ○○○○ 및 ○○ ○○○' 건과 병합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통보] ○○○급유소의 "취급소" 허가 미비사항을 통보하니, ○○○급유소에 설치된 위험물 시설 · 취급용도 · 법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 · 전보인사 · 교육훈련 · 성과상여금 지급 · 표창 · 포상대상자 추천 ·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